

2015.04.20

제 5 호

KLSI

ISSUE PAPER

www.klsi.org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 소장

[목차]

1. 머리말
2. 최저임금 수혜자와 영향률
3. 최저임금 미달자와 미달자 비율
4. 맺는 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호

전화 02) 393-1457

팩스 02) 393-4449

www.facebook.com/ksiedit

<요약>

-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혜자(최저임금의 90~110% 수령 노동자)는 121만 명이고 영향률은 6.5%다.
 -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2013년 8월 140만 명(7.7%)에서 2014년 8월 121만 명(6.5%)으로, 1년 사이 19만 명(1.2%p) 감소했다.

- 최저임금 수혜자는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에서도 시간제,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업장, 비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몰려 있다.
 - 최저임금은 여성 친화적이고, 청년 학생과 저학력 고령자 친화적이며, 무노조 비조합원 친화적이고, 비정규직 친화적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사회적 약자 120~14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법정 최저임금(5,210원) 미달자는 227만 명이고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12.1%다.
 - 최저임금 미달자(비율)는 2013년 8월 209만 명(11.4%)에서 2014년 8월 227만 명(12.1%)으로 1년 만에 18만 명(0.7%p) 증가했다.

- 최저임금 미달자는 최저임금 수혜자와 동질적인 집단이다.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에서도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업장, 비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몰려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면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 소장

1. 머리말

최저임금 수혜자와 영향률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매년 두 차례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를 작성하면서 최저임금 미달자와 그 비율을 발표해 왔지만, 최저임금 수혜자와 영향률을 따로 추정하지는 않았다. 2014년 8월 최저임금 미달자는 227만 명(12.1%)으로, 노동자 8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을 올려봤자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오해마저 생겨나고 있다.

이 글은 ILO(2013)에 따라 최저임금의 90~110%를 수령하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수혜자로 정의하고, 전체 노동자 대비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을 최저임금 영향률로 정의한다. 제2절 최저임금 수혜자와 영향률에서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추이와 속성별 영향률을 추정하고 임금분포를 살펴봄으로써,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사회적 약자 120~14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제3절 최저임금 미달자와 미달자 비율에서는 최저임금 미달자와 수혜자가 동질적인 집단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면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2. 최저임금 수혜자와 영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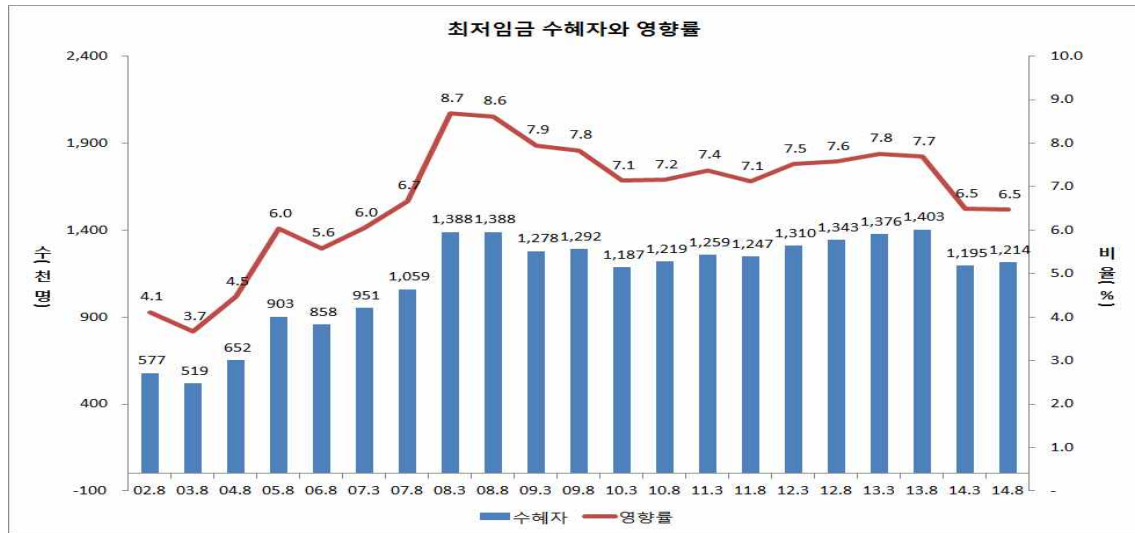
가. 연도별 추이

2014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고, 2015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다.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혜자(최저임금의

* 이 글은 심상정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4월 15일)에서 발표한 주제발표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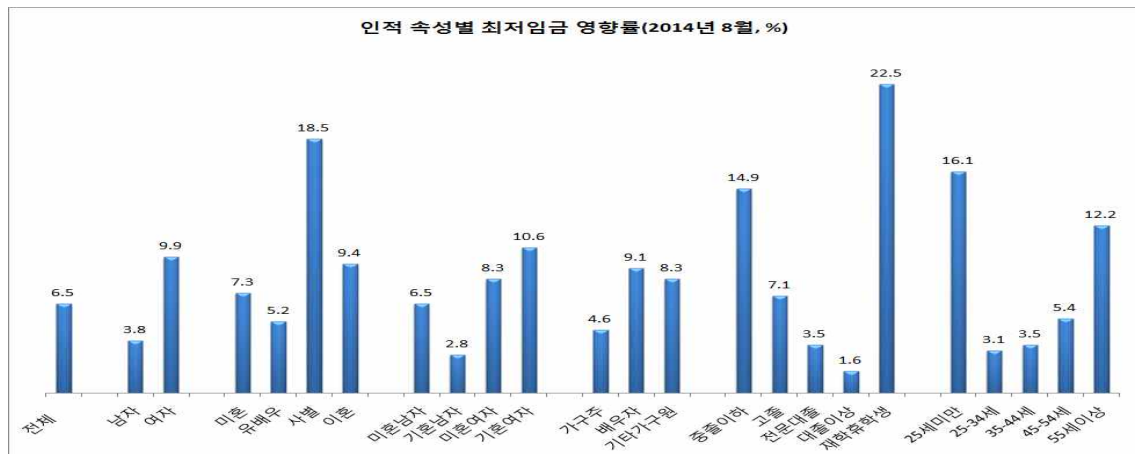
90~110% 수령 노동자)는 121만 명이고 최저임금 영향률은 6.5%다.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2003년 8월 52만 명(3.7%)에서 2008년 3월 139만 명(8.7%)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2009년 3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 3월에는 119만 명(7.1%)으로 감소했다. 그 뒤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서 2013년 8월에는 140만 명(7.7%)으로 증가했지만, 2014년 3월에는 120만 명(6.5%)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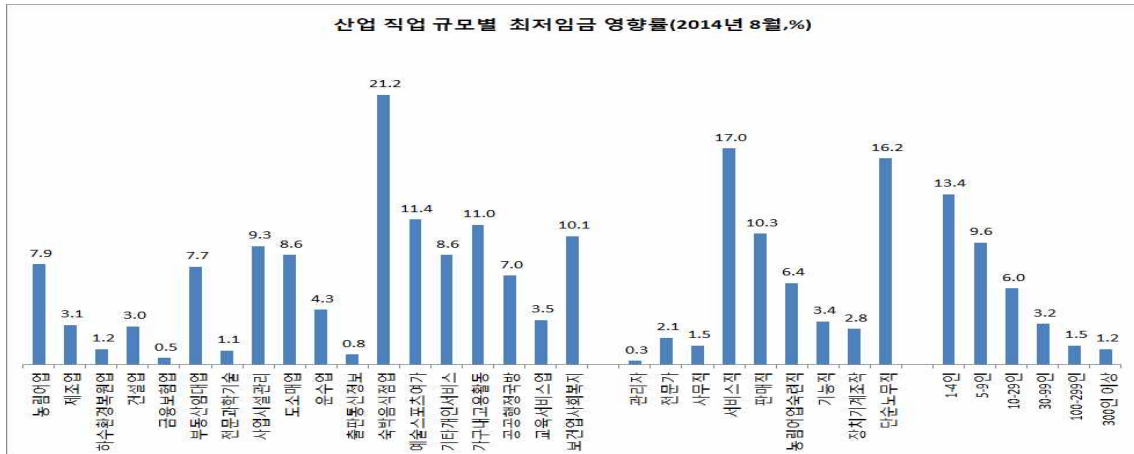


나. 속성별 영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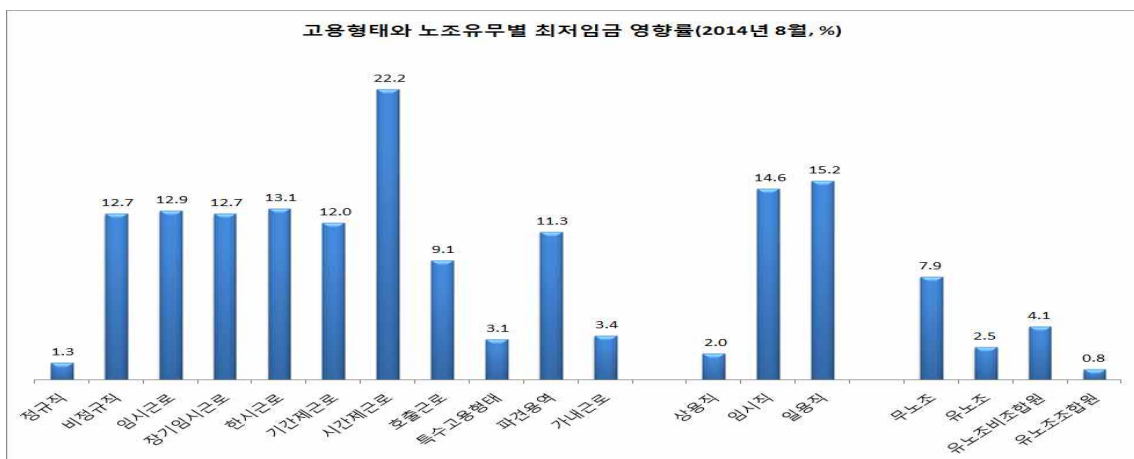
2014년 8월 최저임금 영향률은 여성(9.9%)이 남성(3.8%)보다 높고, 혼인상태별로는 사별(18.5%), 이혼(9.4%), 미혼(7.3%), 유배우자(5.2%) 순이다. 성별 혼인별로는 기혼여성(10.6%), 미혼여성(8.3%), 미혼남자(6.5%), 기혼남자(2.8%) 순이고, 가구주관계는 배우자(9.1%), 기타가구원(8.3%), 가구주(4.6%) 순이다. 학력별로는 학생(22.5%)과 저학력층(14.9%), 연령별로는 청년(16.1%)과 고령자(12.2%)가 특히 높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21.2%)이 가장 높고,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0.1%),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7.0%) 등 공공부문도 높은 편에 속한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직(17.0%)과 단순노무직(16.2%)이 높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13.4%), 5~9인(9.6%)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다.



고용형태별 최저임금 영향률은 비정규직(12.7%)이 정규직(1.3%)보다 10배 높다.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시간제근로(22.2%)가 가장 높고, 장기임시근로(12.7%), 기간제근로(12.0%), 파견용역근로(11.3%) 순이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일용직(15.2%), 임시직(14.6%), 상용직(2.0%) 순이다. 노조유무별로는 무노조(7.9%)가 유노조(2.5%)보다 높고, 노조가 있는 곳도 비조합원(4.1%)이 조합원(0.8%)보다 높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저임금 수혜자는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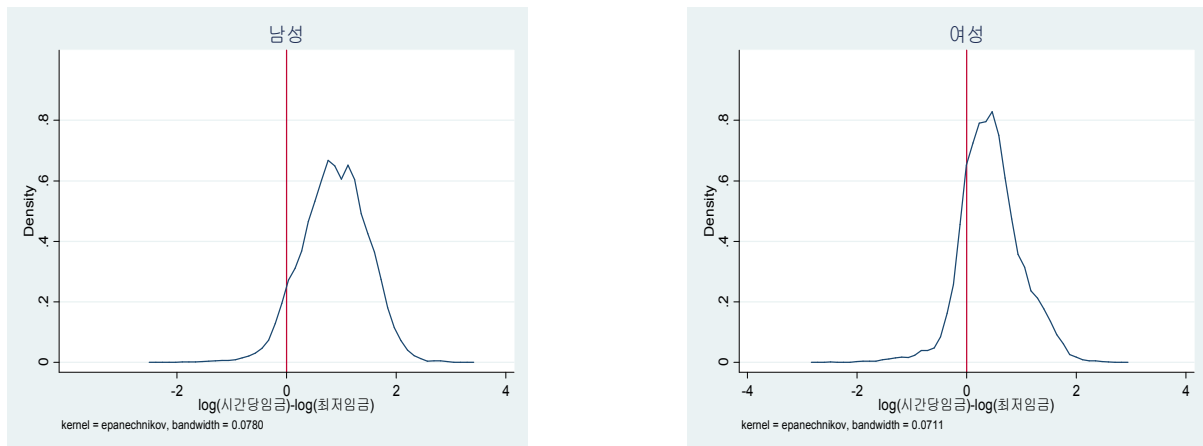
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 그 가운데서도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업장, 비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최저임금은 여성 친화적이고, 청년 학생과 저학력 고령자 친화적이며, 무노조 비조합원 친화적이고, 비정규직 친화적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사회적 약자 120~14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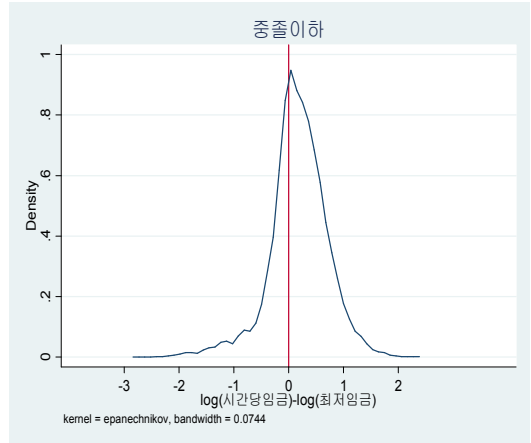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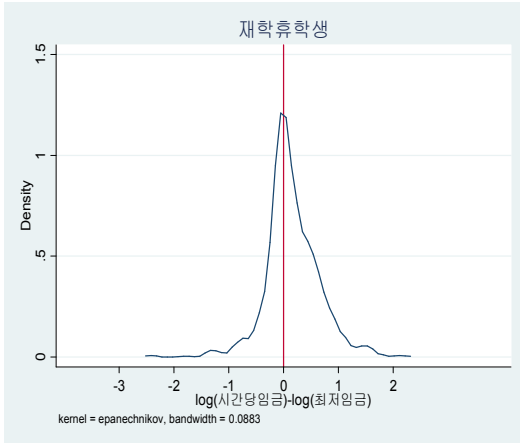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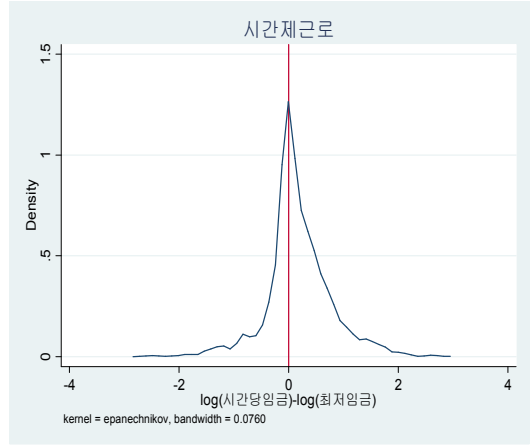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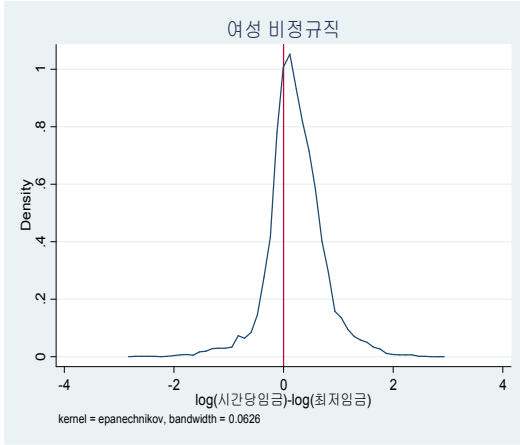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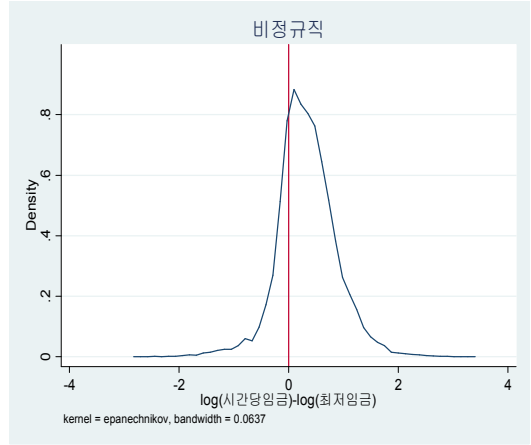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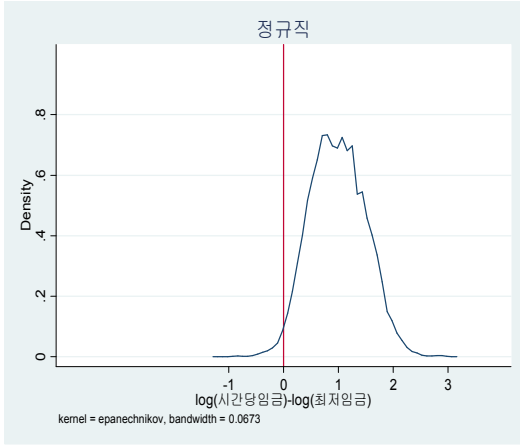
다. 임금분포

최저임금이 사회적 약자들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사실은 임금분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ILO(2013)는 kernel density 추정치를 사용해서 최저임금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아래 그래프는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임금노동자의 ‘ $\log(\text{시간당임금}) - \log(\text{최저임금})$ ’ kernel density 추정치를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여기서 0은 노동자가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오른쪽(+)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 왼쪽(-)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최저임금이 남성 정규직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하다.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최저임금 주변에 밀집해 있고, 시간제 근로자 임금도 최저임금에 좌우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의 임금과 중고령자들의 임금도 최저임금 주변에 밀집해 있다.

[그림 1] ‘ $\log(\text{시간당임금}) - \log(\text{최저임금})$ ’ kernel density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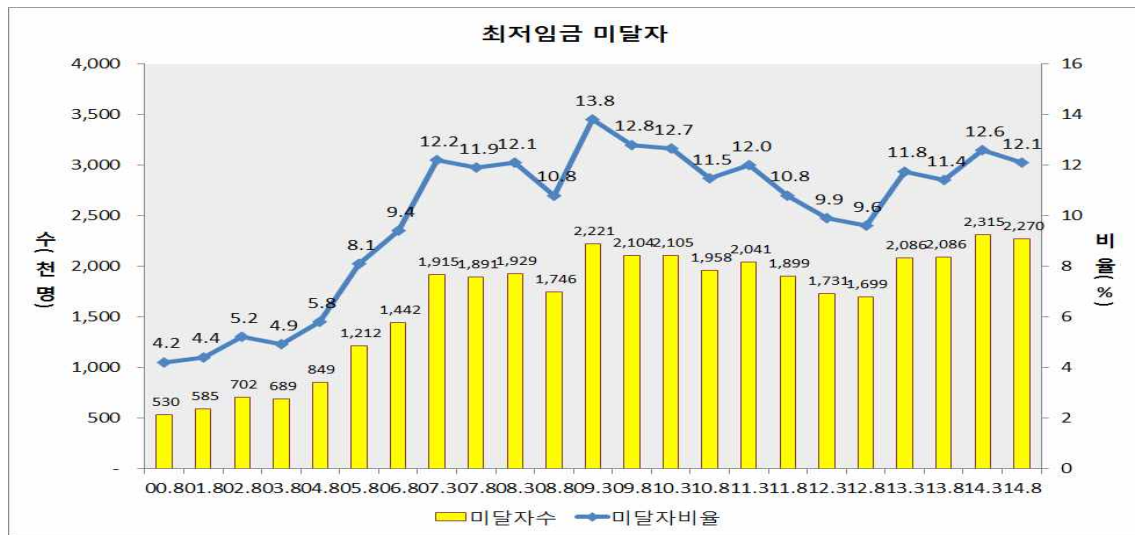


3. 최저임금 미달자와 미달자 비율

가.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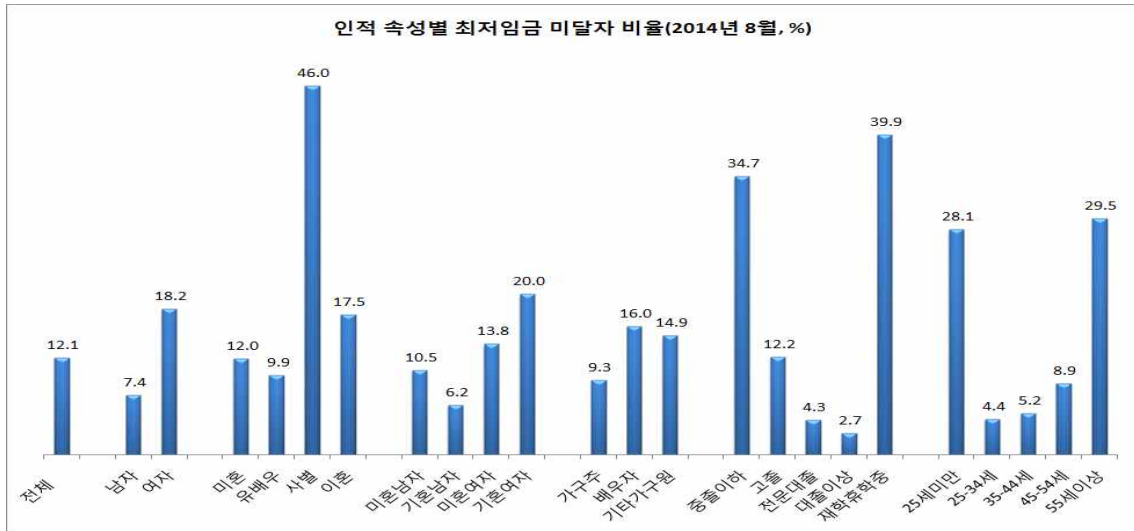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법정 최저임금(5,210원) 미달자는 227만 명(12.1%)이다. 연도별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2009년 3월 222만 명(13.8%)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 8월에는 170만 명(9.6%)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3년 3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 8월에는 227만 명(12.1%)으로 2년 만에 57만 명(2.5%p) 증가했다.

노동자 8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 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3만 명(12.9%)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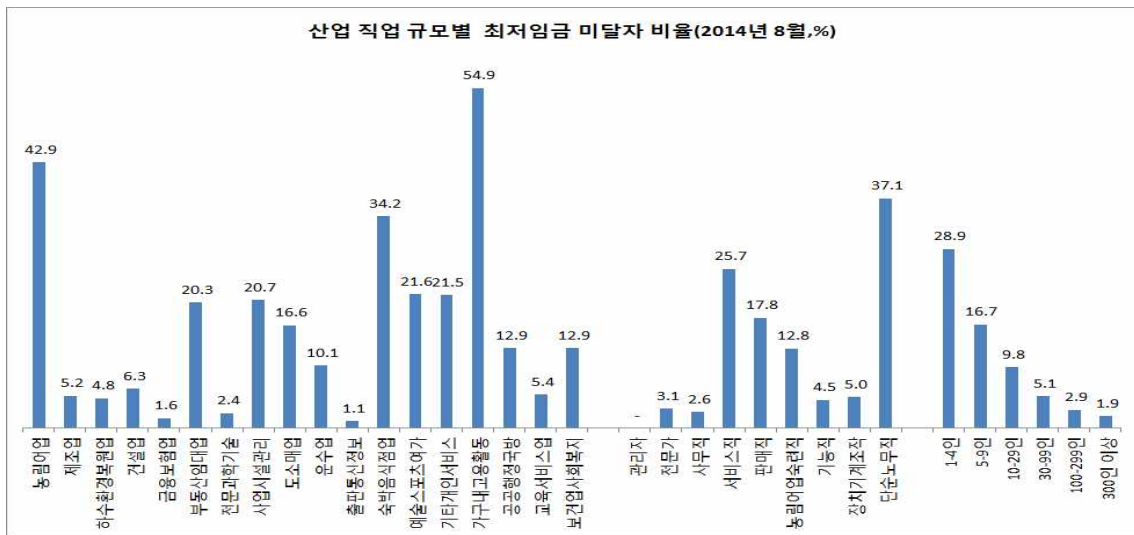


나. 속성별 미달자 비율

2014년 8월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여성(18.2%)이 남성(7.4%)보다 높고, 혼인상태별로는 사별(46.0%), 이혼(17.5%), 미혼(12.0%), 유배우자(9.9%) 순이다. 성별 혼인별로는 기혼여성(20.0%), 미혼여성(13.8%), 미혼남자(10.5%), 기혼남자(6.2%) 순이고, 가구주관계는 배우자(16.0%), 기타가구원(14.9%), 가구주(9.3%) 순이다. 학력별로는 학생(39.9%)과 저학력층(34.7%), 연령별로는 청년(28.1%)과 고령자(29.5%)가 특히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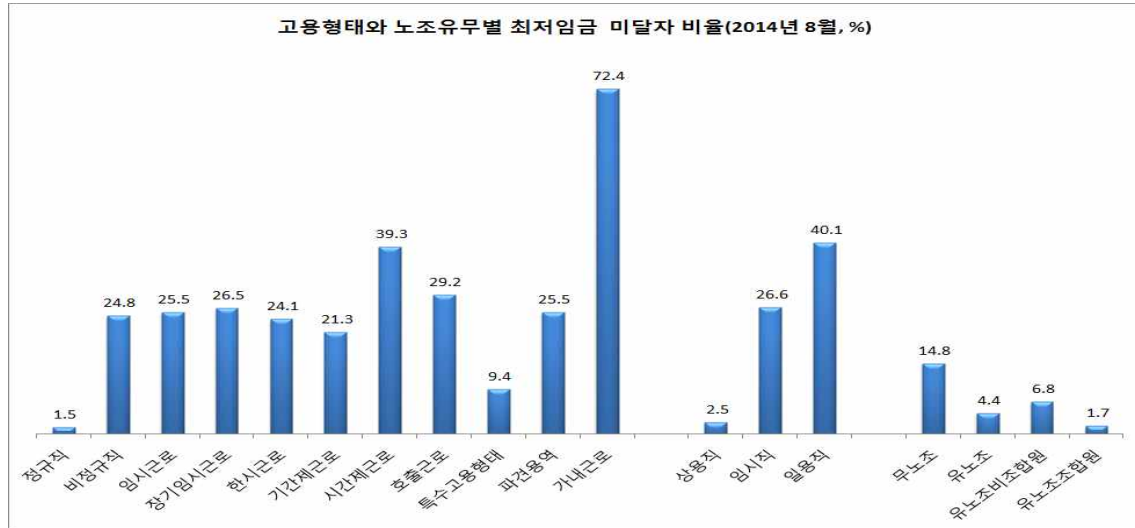


산업별로는 가구내고용활동(54.9%)과 농림어업(42.9%), 숙박음식점업(34.2%)이 가장 높고,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2.9%),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12.9%) 등 공공부문도 높은 편에 속한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직(25.7%)과 단순노무직(37.1%)이 높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28.9%), 5~9인(16.7%)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다.



고용형태별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비정규직(24.8%)이 정규직(1.5%)보다 16배 높다.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가내근로(72.4%)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시간제근로(39.3%), 호출근로(29.2%), 장기임시근로(26.5%), 기간제근로(21.3%) 순이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일용직(40.1%), 임시직(26.6%), 상용직(2.5%) 순이다. 노조유무별로는 무노조(14.8%)가 유노조(4.4%)보다 높고, 노조가 있는 곳도 비조합원(6.8%)이 조합원(1.7%)보다 높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저임금 미달자는 최저임금 수혜자와 동질적인 집단이다.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 그 가운데서도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업장, 비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면 이들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4. 맺는 말

2014년 8월 현재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121만 명(6.5%)이고, 최저임금 미달자는 227만 명(12.1%)이다.** 최저임금 미달자는 최저임금 수혜자와 동질적인 집단으로,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에서도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업장, 비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에 몰려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면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최저임금은 여성 친화적이고, 청년 학생과 저학력 고령자 친화적이며, 무노조 비조합원 친화적이고, 비정규직 친화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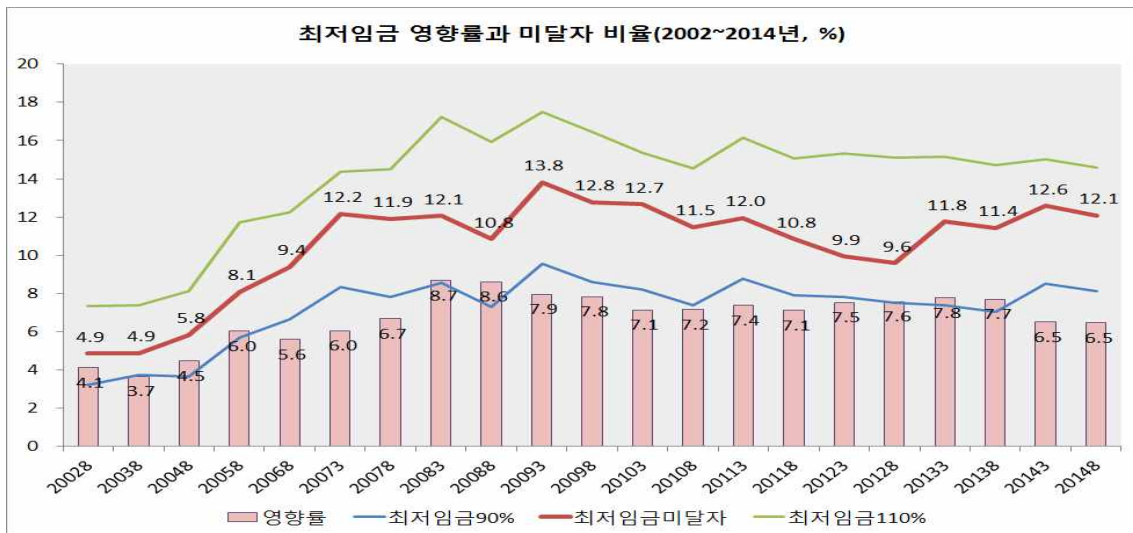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4년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를 257만 명(14.5%)으로 발표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정방식은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 미달자를 전원 최저임금 수혜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표1> 최저임금 영향률과 미달자 비율의 연도별 추이

연도	수(천명)					비율(%)				
	90% 미만 (1)	90~100% 미만 (2)	100~110% 미만 (3)	미달자 (1)+(2)	수혜자 (2)+(3)	90% 미만 (1)	90~100% 미만 (2)	100~110% 미만 (3)	미달률 (1)+(2)	영향률 (2)+(3)
2002년	454	227	350	682	577	3.2	1.6	2.5	4.9	4.1
2003년	527	162	357	689	519	3.7	1.1	2.5	4.9	3.7
2004년	530	319	333	849	652	3.6	2.2	2.3	5.8	4.5
2005년	851	362	541	1,212	903	5.7	2.4	3.6	8.1	6.0
2006년	1,019	422	435	1,442	858	6.6	2.8	2.8	9.4	5.6
2007년	1,240	651	408	1,891	1,059	7.8	4.1	2.6	11.9	6.7
2008년	1,178	568	820	1,746	1,388	7.3	3.5	5.1	10.8	8.6
2009년	1,420	684	608	2,104	1,292	8.6	4.1	3.7	12.8	7.8
2010년	1,260	697	522	1,958	1,219	7.4	4.1	3.1	11.5	7.2
2011년	1,387	512	735	1,899	1,247	7.9	2.9	4.2	10.8	7.1
2012년	1,333	366	976	1,699	1,343	7.5	2.1	5.5	9.6	7.6
2013년	1,283	803	600	2,086	1,403	7.0	4.4	3.3	11.4	7.7
2014년	1,525	745	469	2,270	1,214	8.1	4.0	2.5	12.1	6.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부도1> 최저임금 영향률과 미달자 비율 추이



<부표2> 최저임금 영향률과 미달자 비율(2014년 8월)

	수(천명)					비율(%)				
	90% 미만 (1)	90~100% 미만 (2)	100~110% 미만 (3)	미달자 (1)+(2)	수혜자 (2)+(3)	90% 미만 (1)	90~100% 미만 (2)	100~110% 미만 (3)	미달률 (1)+(2)	영향률 (2)+(3)
전체	1,525	745	469	2,270	1,214	8.1	4.0	2.5	12.1	6.5
남자	542	246	160	788	406	5.1	2.3	1.5	7.4	3.8
여자	983	498	310	1,481	808	12.1	6.1	3.8	18.2	9.9
미혼	403	237	153	640	390	7.5	4.4	2.9	12.0	7.3
유배우	807	373	249	1,180	622	6.8	3.1	2.1	9.9	5.2
사별	213	90	32	303	122	32.4	13.7	4.9	46.0	18.5
이혼	103	44	35	147	79	12.3	5.2	4.2	17.5	9.4
미혼남자	199	109	82	308	191	6.8	3.7	2.8	10.5	6.5
기혼남자	343	137	78	480	215	4.5	1.8	1.0	6.2	2.8
미혼여자	204	128	71	332	199	8.5	5.3	2.9	13.8	8.3
기혼여자	779	370	238	1,149	608	13.6	6.5	4.2	20.0	10.6
가구주	667	291	184	958	475	6.5	2.8	1.8	9.3	4.6
배우자	425	210	151	635	361	10.7	5.3	3.8	16.0	9.1
기타가구원	433	244	134	677	378	9.5	5.4	3.0	14.9	8.3
중졸이하	600	245	118	845	363	24.6	10.1	4.8	34.7	14.9
고졸	520	268	192	788	460	8.0	4.1	3.0	12.2	7.1
전문대졸	76	44	55	120	99	2.7	1.6	2.0	4.3	3.5
대졸이상	117	51	45	168	96	1.9	0.8	0.7	2.7	1.6
재학휴학중	212	137	60	349	197	24.3	15.7	6.9	39.9	22.5
25세미만	282	172	88	454	260	17.5	10.7	5.4	28.1	16.1
25-34세	120	82	60	202	142	2.6	1.8	1.3	4.4	3.1
35-44세	152	97	69	249	166	3.2	2.0	1.4	5.2	3.5
45-54세	271	128	117	399	245	6.0	2.8	2.6	8.9	5.4
55세이상	699	266	135	965	401	21.3	8.1	4.1	29.5	12.2
정규직	100	57	78	157	135	1.0	0.6	0.8	1.5	1.3
비정규직	1,425	688	391	2,113	1,079	16.7	8.1	4.6	24.8	12.7
임시근로	1,419	681	380	2,100	1,061	17.3	8.3	4.6	25.5	12.9
장기임시근로	900	377	237	1,277	614	18.7	7.8	4.9	26.5	12.7
한시근로	519	304	143	823	447	15.2	8.9	4.2	24.1	13.1
기간제근로	358	228	101	586	329	13.0	8.3	3.7	21.3	12.0
시간제근로	499	299	152	798	451	24.5	14.7	7.5	39.3	22.2
호출근로	188	47	26	235	73	23.4	5.8	3.2	29.2	9.1
특수고용형태	36	13	3	49	16	6.9	2.5	0.6	9.4	3.1
파견용역	148	56	34	204	90	18.5	7.0	4.3	25.5	11.3
가내근로	41	1	1	42	2	70.7	1.7	1.7	72.4	3.4
상용직	192	114	127	306	241	1.6	0.9	1.0	2.5	2.0
임시직	889	469	275	1,358	744	17.4	9.2	5.4	26.6	14.6
일용직	443	161	68	604	229	29.4	10.7	4.5	40.1	15.2
농림어업	49	5	5	54	10	38.9	4.0	4.0	42.9	7.9
제조업	135	65	55	200	120	3.5	1.7	1.4	5.2	3.1
하수환경복원업	3	1	-	4	1	3.6	1.2	-	4.8	1.2
건설업	53	32	9	85	41	3.9	2.4	0.7	6.3	3.0
금융보험업	11	2	2	13	4	1.4	0.2	0.2	1.6	0.5
부동산임대업	59	12	15	71	27	16.9	3.4	4.3	20.3	7.7
전문과학기술	16	5	5	21	10	1.8	0.6	0.6	2.4	1.1

	수(천명)					비율(%)				
	90% 미만 (1)	90~100% 미만 (2)	100~110% 미만 (3)	미달자 (1)+(2)	수혜자 (2)+(3)	90% 미만 (1)	90~100% 미만 (2)	100~110% 미만 (3)	미달률 (1)+(2)	영향률 (2)+(3)
사업시설관리	166	62	40	228	102	15.1	5.6	3.6	20.7	9.3
도소매업	258	119	76	377	195	11.3	5.2	3.3	16.6	8.6
운수업	58	19	14	77	33	7.6	2.5	1.8	10.1	4.3
출판통신정보	5	2	3	7	5	0.8	0.3	0.5	1.1	0.8
숙박음식점업	276	170	106	446	276	21.2	13.0	8.1	34.2	21.2
예술스포츠여가	33	20	8	53	28	13.5	8.2	3.3	21.6	11.4
기타개인서비스	130	37	30	167	67	16.7	4.8	3.9	21.5	8.6
가구내고용활동	44	6	4	50	10	48.4	6.6	4.4	54.9	11.0
공공행정국방	77	49	19	126	68	7.9	5.0	2.0	12.9	7.0
교육서비스업	51	26	24	77	50	3.6	1.8	1.7	5.4	3.5
보건업사회복지	99	112	54	211	166	6.0	6.8	3.3	12.9	10.1
관리자	-	-	1	-	1	-	-	0.3	-	0.3
전문가	85	43	43	128	86	2.0	1.0	1.0	3.1	2.1
사무직	81	26	34	107	60	2.0	0.6	0.8	2.6	1.5
서비스직	273	187	116	460	303	15.3	10.5	6.5	25.7	17.0
판매직	180	112	58	292	170	10.9	6.8	3.5	17.8	10.3
농림어업숙련직	5	1	2	6	3	10.6	2.1	4.3	12.8	6.4
기능직	47	26	28	73	54	2.9	1.6	1.7	4.5	3.4
장치기계조작	72	36	25	108	61	3.3	1.7	1.1	5.0	2.8
단순노무직	781	313	164	1,094	477	26.5	10.6	5.6	37.1	16.2
1-4인	737	295	184	1,032	479	20.6	8.3	5.1	28.9	13.4
5-9인	348	201	115	549	316	10.6	6.1	3.5	16.7	9.6
10-29인	257	150	97	407	247	6.2	3.6	2.3	9.8	6.0
30-99인	124	62	53	186	115	3.4	1.7	1.5	5.1	3.2
100-299인	34	19	9	53	28	1.9	1.0	0.5	2.9	1.5
300인 이상	26	18	9	44	27	1.1	0.8	0.4	1.9	1.2
무노조	1,387	664	423	2,051	1,087	10.0	4.8	3.1	14.8	7.9
유노조	138	80	46	218	126	2.8	1.6	0.9	4.4	2.5
유노조비조합원	111	68	40	179	108	4.2	2.6	1.5	6.8	4.1
유노조조합원	27	12	6	39	18	1.2	0.5	0.3	1.7	0.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8월) 원자료.

참고문헌

ILO(2013), *World of Work Report 2013 : Repairing the economic and social fabric.*
 김유선(201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14.8) 결과”, KLSI 이슈페이퍼 2014-22.
 김유선(2015),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심상정 의원실 주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丙들의 외침” 현장증언대회 및 토론회 자료집, 66~75쪽.